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○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장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상인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재산세 감면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조례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임

< 개정된 주요내용 >

(1) 안 제13조제2항에서 “2007년 1월 1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”를 “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”로 하였음

(2) 안 제13조제1항 및 2항에서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 또는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통일하여 표기하였음

[검토의견]

○ 동 개정조례안은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에 따라 상업 기반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% 감면을 100%로 면제함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해 「지방세법」 제3조제7조,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 시달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